

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

(김용연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094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0년 12월 23일
발 의 자 : 김용연 의원(1명)
찬 성 자 : 권순선, 김상진, 김생환,
김수규, 문영민, 양민규,
이동현, 이호대, 전병주,
최기찬, 황인구 의원(11
명)

1. 제안이유

-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해체·제거작업 감리인의 지정,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운용될 수 있도록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2조의 2 신설).
- 나.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2조의3 신설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석면안전관리법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2(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) ① 석면해체·제거작업 및 석면해체·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법 제30조에 따라 석면해체·제거작업 개시 전까지 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석면해체·제거작업감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.

② 석면해체·제거작업감리인의 지정기준, 지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,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한 바에 따른다.

제12조의3(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등) ①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되려는 자는 법 제30조의2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

②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.

③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관리
2.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농도기준(이하 이

조에서 “석면농도기준“이라 한다) 준수 여부 관리

3. 석면해체·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 및 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
4.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석면 노출방지 대책 검토
5. 석면해체·제거업자의 관련 법령 준수 여부 확인
6. 그 밖에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업무

④ 시장은 법 제30조의6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을 취소하거나, 시정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신 설></p>	<p>제12조의2(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) ① 석면해체·제거 작업 및 석면해체·제거작업을 수 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법 제30조에 따라 석면해체·제거작 업 개시 전까지 석면해체·제거작 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석면 해체·제거작업감리인을 지정하 여야 한다.</p> <p>② 석면해체·제거작업감리인의 지정기준, 지정방법 등에 관한 사 항은 환경부장관,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공 동으로 고시한 바에 따른다.</p>
<p><신 설></p>	<p>제12조의3(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등) ①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이 되려는 자는 법 제30조의2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등록증 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 니 된다.</p> <p>③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</p>

준수 여부 관리

2.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38조의5 제1항에 따른 석면농도기준(이하 이 조에서 “석면농도기준“이라 한다) 준수 여부 관리

3. 석면해체·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 및 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

4.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석면 노출방지 대책 검토

5. 석면해체·제거업자의 관련 법령 준수 여부 확인

6. 그 밖에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업무

④ 시장은 법 제30조의6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을 취소하거나, 시정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